

다.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

등급평가 계도기간

-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·포장재 수 등을 감안, **법 시행 후 9개월간**(‘19.12.25~‘20.9.24) 계도기간 운영
- 의무생산자가 **계도기간**(~‘20.9.24) 이후 **환경공단**으로부터 포장재의 재질·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, **과태료 대상**
※ 단, ’19.12.25 이전부터 제조·수입되고 있던 제품은 ‘라.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운영 계획’의 기존제품 등급평가 및 표시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내 평가신청을 한 경우 과태료 비대상

등급표시 유예기간

-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,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(9개월 추가 연장)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부여
※ 등급표시와 관련된 유예기간은 표시가 의무화된 ‘재활용 어려움’ 등급에만 적용(최우수, 우수, 보통은 등급평가 이후 자율 표시)



라.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운영 계획

기존제품*의 포장재 등급평가 및 표시 계획

* 기존제품 : '19.12.25 이전부터 제조·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(제조일자가 '19.12.24까지인 제품은 적용 비대상)

- (평가 결과서 자동발급 대상) 자체평가 결과 '재활용 어려움' 등급의 모든 포장재
 - (평가)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할 시 평가 결과서 자동 발급 예정, '20.9.25 이후 평가 결과서를 받지 아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
 - (표시) 평가 시점과 관계없이 '20.9.24부터 등급표시 유예기간 적용
 - ※ (예시) A포장재에 대해 '20.1.1 '재활용 어려움' 등급으로 자체평가 결과 제출 시, '20.9.24부터 등급표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'21.3.24(연장신청 시 '21.12.24)까지 A포장재 사용 제품에 등급을 표시해야 함
- (평가 결과서 사후발급 대상) 자체평가 결과 '재활용 어려움' 등급과 '재활용 최우수, 우수' 등급의 유리병, 페트병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
 - (평가) '20.9.24까지 자체평가 결과 제출 시 '21.3.24까지 평가 확인서를 사후발급 예정으로, '20.9.24까지 환경공단에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 시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과태료 비대상
 - (표시) 평가 결과서 발급 전까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표시가 가능하지만(과태료 비대상), 환경공단 평가 확인 결과가 자체평가 결과와 다른 경우 '21.12.24까지 등급표시를 정정하거나, 신규로 표시해야 함
 - ※ (예시1) '20.1.1 B 포장재의 자체평가 결과를 '재활용 우수'로 제출하고 '20.5.1 이를 제품에 표시하였으나, '20.10.1 평가 확인 결과 '재활용 보통' 통보를 받은 경우 '21.12.24까지 등급표시를 정정하거나 삭제해야 함
 - ※ (예시2) '20.1.1 C 포장재의 자체평가 결과를 '재활용 보통'으로 제출하고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, '20.11.1 평가 확인 결과 '재활용 어려움' 통보를 받은 경우 '21.12.24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해야 함
- (평가 결과서 10일 이내 발급 대상) 자체평가 결과 '재활용 우수' 등급 유리병, 페트병의 포장재
 - (평가) 환경공단에 평가접수 후 10일 이내 환경공단에서 평가 결과서 발급 예정으로, '20.9.25 이후 평가 결과서를 받지 아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출시할 경우 과태료 대상

- (표시) 평가 결과서를 발급 받은 후에 제품에 표시 가능(평가 결과서 일부 전에는 제품에 표시 불가)

등급평가 계도기간 중 출시된 신규제품의 포장재

- 기존제품 포장재의 등급평가 및 표시와 같은 방식으로 등급평가

등급평가 계도기간 종료 후 출시된 신규제품의 포장재

- 기 평가받은 포장재와 재질·구조가 동일한 포장재 사용제품

- (평가) 별도 평가 없이 '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관리대장'에 기입 후 출시 가능
- (표시) 기 평가받은 포장재의 표시 유예기간이 끝난 경우 표시 후 출시하여야 하고, 표시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표시 없이 출시 가능하나, 표시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표시 필요

- 신규 재질·구조 포장재 사용제품

- (평가) 신규 포장재 재질·구조에 대해 환경공단에 평가 접수하여 평가 결과서를 받은 후 출시 가능
- (표시)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,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(9개월 추가연장)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적용

